

안양시 상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

제정 1984. 2. 1 규칙 제 291호
개정 1989. 7. 8 규칙 제 532호
일부개정 2015. 2. 5 규칙 제1415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안양시 상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」 제22조에 따라 세 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2. 5>

제2조(중요자산) 「안양시 상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 17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 2. 5>

1. 토지
2. 건물
3. 구축물
4. 관설비
5. 기계 및 장치
6. 취수펌프
7. 공구, 기구, 비품
8. 차량

제3조(관직지정) 조례 제20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 기 위한 관직지정은 「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」 제2조를 준용한다. <개 정 2015. 2. 5>

제4조(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)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 의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2. 5>

제5조(준용) 법령,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은 「안양시 지방 공기업 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15. 2. 5>

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안양시 상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제2항에 의거지정한 관직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89. 7. 8 규칙 제53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2. 5 규칙 제1415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